

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0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성군수
나. 회 부 일 자: 2024. 7. 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4. 7. 1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
- (현행)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
→ (개정)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
나.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증액(안 제2조): 월 50만원 → 월 60만원
다.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(안 제4조): 월 30만원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기 확보
다. 협 의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9527(2024. 5. 14.)호]
라. 기 타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897호
가) 예고기간: 2024. 5. 17.(금) ~ 2024. 6. 6.(수)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업무수당 증액과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을 통한 수의직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제명변경

○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 →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

-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(안 제4조)

○ 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신설하였음.

-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증액(별표 3의2)

○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증액하여 규정하였음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에 따라 제명을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에서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로 변경하고,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시·군 공무원의 경우 월 350,000원 초과 월 600,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명시하고 있어, 현행 월 500,000원에서 월 600,000원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상향을 통한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

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0,000원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직급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